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2 . 1 0 . 6 . ( 목 )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90
발의일자 : 2022. 09. 23.
회부일자 : 2022. 09. 2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정경민 의원 외 17명

2. 제안 이유

-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2조, 안 제3조)
-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8조)
-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해당부서)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9월 28일 ~ 10월 4일
- 관계법령 : 「환경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3, 제8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 도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는 도지사가 환경보건계획<sup>1)</sup>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항에서 도지사가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및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 주요 환경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

1) 환경부(2021.11)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의 환경보건정책 관련 전문가인 시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도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출연 정책연구기관(대구경북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보건·환경 관련 검사연구기관(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정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인력 구성을 보면, 환경보건 전문가,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한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9조**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sup>2)</sup>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도의 지역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는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성 질환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시 청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확대 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으로 도내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2조**는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

2)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건강영향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영향이 없는 경우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 역학조사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임.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실행력을 확보한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는 도지사가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종합 의견

- 「환경보건법」 개정·시행(2021. 7. 6)으로 지역 환경보건 문제 대응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과 관리 책임이 지역중심으로 강화 되었습니다<sup>3)</sup>.
- 이에,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과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위법 개정과 조례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의 지역환경 보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3)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고 발표하였음(환경부, 2021.6.23.)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  
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

《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절차 》

